



# 규정

## 동원학원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문서번호	TWA-A142
제정일자	2011. 09. 01.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4


### 목 차

### 부칙

작성부서	사무처	제정일자	2011. 09.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총 장
서 명								
일 자								



	<b>규정</b>	문서번호	TWA-A142	
		제정일자	2011. 09. 01.	
	<b>동원학원발전위원회 운영 규정</b>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원학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설치는 법인정관 제7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원대학교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이사, 교직원,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회장 등)** ① 위원회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인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간사1인을 대학의 일반직6급 이상의 직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안 또는 자문한다.

1. 동원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수익용기본재산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대학발전 기금 유치에 관한 사항
4. 법인정관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b>규정</b>		문서번호		TWA-A142	
			제정일자		2011. 09. 01.	
	<b>동원학원발전위원회 운영 규정</b>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4/4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담당직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동원대학교 소속으로 한다.

③ 담당직원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 검토,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작성된 문서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비 지출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비는 동원대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계 책임은 총장의 지휘에 의하되, 실무책임은 사무처장이 한다.

**제12조(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